성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9년 3월 일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개정이유

❍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조건,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대한 기준완화 등으로 인해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을 보완하고자 함.

2. 개정내용

가.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

1) **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(안 제11조제1항)**

-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(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)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 가능

2) **육아휴직의 분할 사용(안 제11조제2항)**

-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음

나.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(안 제4조의2)

○ 국가안보 및 보안·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 마련

다.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 마련(안 제12조)

○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·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 반영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(표준안)

나. 예산에 관한사항 : 해당없음

다. 기　타

1). 개정조례안 : 붙임

2) 신・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3) 입법예고 : 생략(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해당)

성주군 조례 제　　호

성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)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11조의2를 삭제한다.

제11조(병역・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) ①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(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)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.

②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.

제11조의3 제2항 중 “제11조 제1호”를 “제11조”로 하고, 같은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근무성적의 평정)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・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,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・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.

부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 신 설 >	제4조의2(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)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제11조 (휴직)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,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1.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된 때 2.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(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)	제11조(병역·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)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(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)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.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.
제11조의2 (휴직기간)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.	<삭제>
제11조의3 (휴직의 효력) ① (생략) 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,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	제11조의3 (휴직의 효력) ① (현행과 같음) ②제11조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.

현 행	개 정 안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,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.	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.
제12조 (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) ①별정직공무원이 제11조제1호의 사유로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진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 기관내 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	제12조(근무성적의 평정)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·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,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·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.